

니다.

○委員長 金寅東 설명이 충분하신지 모르겠는데 다른 質疑하실 委員 없으십니까?

金箕英委員 충분히 납득이 되었습니까?

아마 제가 설명 드리면 會社法에 준해서 보면 任員하면 代表理事도 포함된다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지……

○金箕英委員 제가 납득은 합니다마는 여기에 주로 代表는 답변을 피하기 위해서 좀 그런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

○議政係長 韓正午 補充說明하겠습니다.

議會가 불러서 답변을 委任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地方自治團體長인 市長뿐입니다.

나머지 사람은 여기 條例에 나오는 關係公務員은 議會가 지정한 사람이 나와서 답변해야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再委任할 수는 없습니다.

○金箕英委員 알겠습니다.

○委員長 金寅東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이 더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議會에 出席하여 答辯할 수 있는 關係公務員등의 範圍에 관한 條例案 動議의 件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?

(「없습니다.」하는 委員 있음)

異議가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(參照)

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
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(안)

제정이유

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○ 시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.

(제2조)

1. 부시장, 교육감, 부교육감
2.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실·국장
3. 종합건설본부장, 상수도사업본부장, 지하철

건설본부장 또는 3급 이상인 자

4.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또는 3급 이상인 자

5.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한 교육장 교육기관장

6. 제5호 규정의 하부행정교육기관 및 교육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3급 이상자

7. 법제137조 및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

○ 기타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, 4급 이상 공무원

제정근거

○ 지방자치법 제37조

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
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(안)

제1조(목적)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범위)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, 답변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관계공무원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부시장, 교육감 및 부교육감
2.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실·국장급
3. 종합건설본부장, 상수도사업본부장, 지하철 건설본부장 또는 소속공무원중 3급 이상인 자
4.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또는 소속공무원중 3급 이상인 자
5.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장, 교육기관장
6.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의 소속공무원중 3급이상인 자
7. 법 제137조 및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

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

소속공무원중 4급 이상인 자를 출석, 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5.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(案)動議의件

(11時 05分)

○委員長 金寅東 이어서 議事日程 第5項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案 動議의 件을 上程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그러면 發議者를 대표해서 孫允準委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孫允準委員 안녕하세요? 民主自由黨 孫允準委員입니다.

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案 動議의 件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해 드리겠습니다.

이 條例는 地方自治法 第36條第1項에 「地方議會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監査하거나 그 事務中 特定事案에 關하여 地方議會의 議決로 조사할 수 있으며 監査 또는 調査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지 확인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補助機關의 出席·證言이나 意見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」라고 規定되어 있고 同條 第3項에는 「第1項의 監査 또는 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」라고 規定되어 있습니다.

또한 同法 施行令 第19條에 의해서 「法 및 이 승에 規定한 것 외에 監査 또는 調査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」라고 되어 있습니다.

이와같이 市議會가 監査 및 調査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法과 승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감사의 범위와 장소 및 활동시간등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條例로 명시해 두고자 하는 것 입니다.

이 條例의 制定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案 動議의 件이 滿場一致로 議決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면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○委員長 金寅東 孫允準委員 수고하셨습니다.

다음은 韓正午議政係長이 件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報告하겠습니다.

○議政係長 韓正午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案 動議의 件의 검토한 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行政事務의 監査·調査는 議會가 行政部를 監視하고 監督하고 하는 핵심적인 條例라고 생각합니다. 다만 이 件에 대해서는 地方議會가 執行機關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法律에서 이미 많은 條項과 規定을 완벽하게 定立해 놓고 있습니다.

다만 그 아주 세부적인, 예를들면 범위나 장소, 활동, 책임, 경비부담 같은 이 지엽적인 문제만은 法에 定立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地方自治法 第36條 그리고 그 施行令 第19條2의 規定에 의해서 그러한 자세한 지엽적인 분야까지도 이 條例에서 수록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이 條例는 地方自治法의 委任을 받아 制定하는 條例이긴 하지만 이 條例의 내용의 특성상 전체의 흐름을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검토한 바를 法律施行令 그리고 이번 條例案을 함께 위에서 다시 검토한 바를 설명드리겠습니다.

行政事務의 監査 및 調査는 定期 會期中에 5日間 하도록 法이 정하고 있습니다.

그리고 특별한 事項이 있을 때는 在籍委員 1/3이 發議하면 특정한 事項에 대해서 별도로 特別委員會를 구성하거나 해당 常任委員會가 調査할 수 있도록 하는 規定이 있습니다. 第2項에 완벽하게 法律과 施行令이 정하고 있어서 條例에서는 별도로 規定하지 않았습니다.

그리고 監査·調査의 실시는 常任委員會 또는 特別委員會에서 계획을 세워서 本會議 議